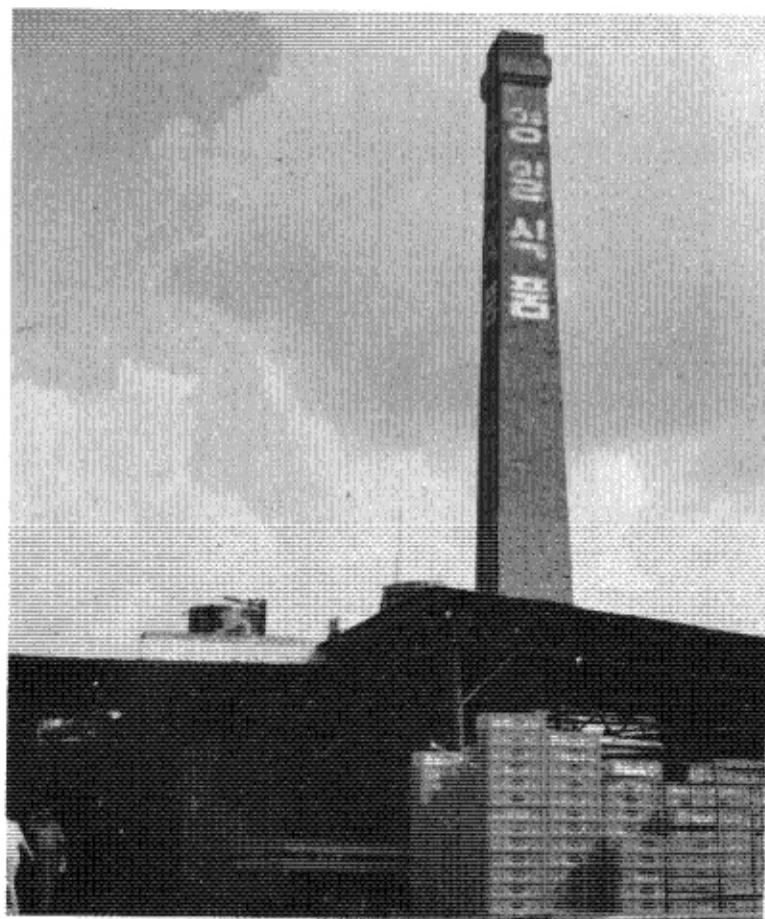


Y식품공업사 화재



Y식품공업사 화재

보일러실 경유탱크 관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

불탑의 작동불량으로 경유가 넘쳐 흘러 –

1. 일반사항

- 건물명 : Y식품공업사
- 소재지 : 광주시 북구 소재
- 화재일시 : 1985년 8월 29일 09시 45분경
- 발화위치 : 보일러실내
- 화재원인 : 전기합선

2. 화재상황

탱크는 가마의 벼너에 연료공급을 하기 위하여 보일러실 구석에 바닥으로부터 약 2m 높이에 설치된 소량의 경유탱크(약 400ℓ 정도)에 펌프를 이용 옥외 저장탱크로부터 받아 올려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 펌프를 가동하였으나 관리자가 없었고 탱크의 유류주입 제동장치인 불탑이 작동되지 않아 경유가 넘쳐 흘러 보일러실 바닥에 많은 경유가 고이게 되었다.

화재 당시 보일러는 가동중에 있었고 여름이므로 경유는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었다. 이때 전기선의 합선에 의해 불꽃이 발생 경유증기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유가 보일러실 바닥에 고여 있었으므로 일시에 전역을 태우게 되었으며 또한 보일러실과 레온기실이 약 0.96m²의 창문으로 연결되어 있어(도면 참조) 화재피해는 확대되었다. 이때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근방에서 작업하던 보일러기사가 보일러실을 들여다본 순간 폭발음이 나면서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 확대방지를 위해 보일러 가동을 중지시키고 중화상을 입고 쓰러졌다. 한편 공장 종업원들이 소화기(포말 16대, 분말 11대)로 소화작업을 하던 중 50m 정도 떨어진 사무실 직원이 평음을 듣고 화재현장을 확인 연락한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화학차 등 9대)에 의하여 화재발생 30분만에 진화되었다.

3. 피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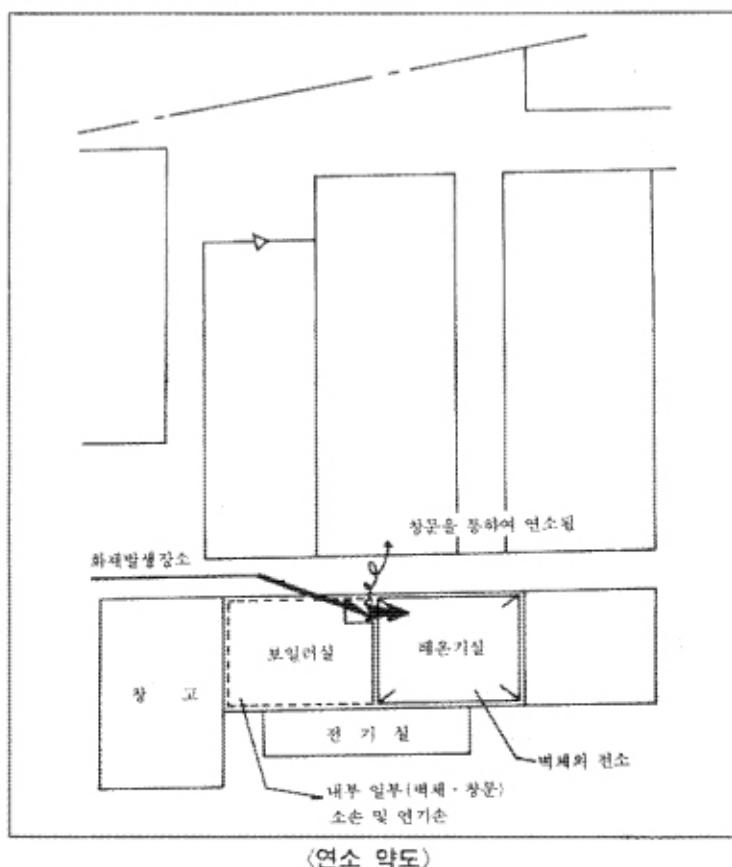
동 화재를 호기심에 보일러실을 들여다 보는 순간 화염에 의해 2명이 중화상을 입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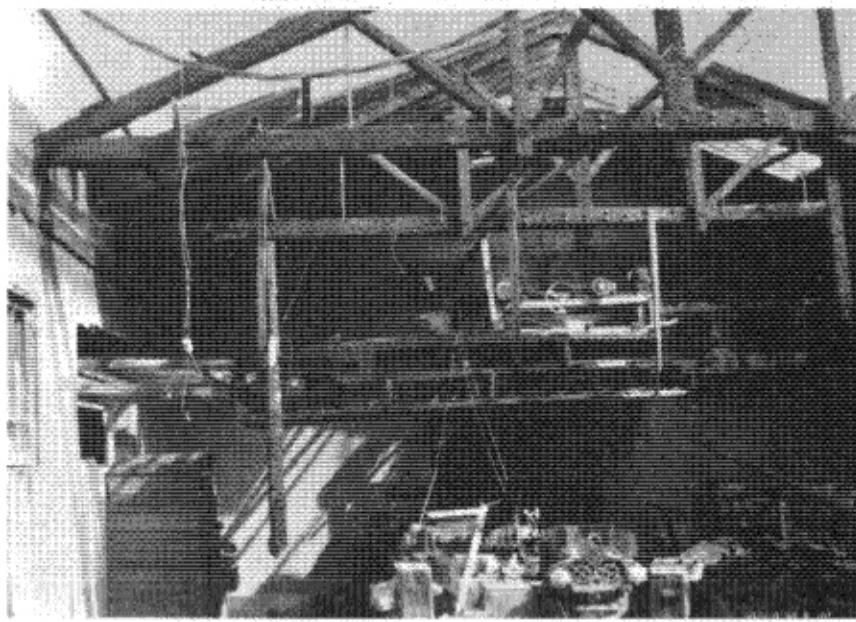
며 4명이 2도 화상을 입고 1명은 보일러가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가료중 10일만에 사망하였으며 공장건물 약 90m² 및 보일러실 약 85m²가 소실되어 건물, 설비 등 4천 4백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공장은 당 협회의 신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보험금 약 4억 4천 만원이 가입되어 있었고 자급 보험금은 약 2천 6백만원이었다.

4. 문제점 및 대책

- (1) 경유를 취급하는 데에는 항상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취급자가 있어 보안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Over-flow 되는 상태에서 계속 펌프가 가동되어 많은 양의 경유가 보일러실 바닥에 고여 일시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다.
- (2) 보일러실은 전용건물 또는 타구역과는 구획되어야 함에도 본공장(래온기실)과 청분으로 통해서 있어 3천 5백여 만원의 재산손실을 증가시키는 등 방화구획상의 문제가 있었다.
- (3) 화재를 호기실에 의해 확인하는 일과 아무 대책 없이 화재발생 장소를 무모하게 뛰어 들어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펼히 위험물취급 관계자 등의 감시자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으며, 방화구획은 완벽하여야 효과가 있음을 알려 주었고 화재에는 호기실과 만용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준 사례였다.





(연소된 레온기실 전경)



(소손된 보일러 콘트롤 박스)